

가계부채 점검회의

8.21.(수), 정부서울청사

'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

-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-

2024. 8. 21.

금 융 위 원 회
금 융 감 독 원

I. 가계부채 현황

- 금융권 가계대출은 금년 4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,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·버팀목 등 정책성대출 중심으로 지속 증가
 - 7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+5.5조원으로 전월(+5.9조원)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주담대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
 - 8월 들어서도 주담대·주식투자 등으로 +4.4조원 증가(~13일, 잠정)
 - 2금융권 가계대출은 부실채권 관리(상각) 등 영향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감소폭이 축소되는 모습
 - 정책성대출은 디딤돌·버팀목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시 확대

<'24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(조원)>

구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
■ 금융권	+0.9	△1.9	△4.9	+4.1	+5.3	+4.2	+5.3
■ 은행권	+3.4	+1.9	△1.7	+5.1	+6.0	+5.9	+5.5
- 주택담보대출 ¹⁾	+4.9	+4.7	+0.5	+4.5	+5.7	+6.2	+5.6
- 기타대출	△1.5	△2.8	△2.2	+0.6	+0.3	△0.3	△0.1
■ 2금융권	△2.5	△3.8	△3.3	△1.0	△0.7	△1.7	△0.2
■ 정책성대출	+2.0	+2.2	+2.1	+2.1	+1.6	+1.6	+1.4
- 디딤돌·버팀목 ²⁾	+3.4	+4.0	+4.0	+4.0	+3.3	+3.2	+3.6
- 보증자리론	△1.4	△1.8	△1.8	△1.9	△1.7	△1.6	△2.2

1) 보증자리론 및 은행재원으로 공급되는 디딤돌·버팀목대출의 정책성대출 포함

2) 주택도시보증기금 재원으로 공급되는 디딤돌·버팀목대출 포함

- 가계부채는 기본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으며, 부동산 시장 상황, 대출규제 등에 따라 증가세가 확대 또는 축소
 - 지난 연말부터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세 지속 및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
- ⇒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 부문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 필요

Ⅱ.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

- DSR(상환능력 심사) 중심의 **일관된 가계부채 관리기조 확립**
- 실물경제·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**단계적 접근**
- (대출한도 직접규제 보다는) **금융회사 자율 리스크 관리 방식**

1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

- (개요)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DSR을 산정하는 제도
 - 스트레스 DSR은 금융이용자의 적응, 업권별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도입중이며, 9.1일부터는 2단계가 시행됨

< 2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내용 >

- (시행시기) '24.9.1. ~
- (대상기관) 은행권 및 2금융권(상호·저축·여전·보험)
- (대상대출) 은행권 주담대 및 신용대출, 2금융권 주담대
- (스트레스 금리) **0.75%p** ('24.6월 기준 스트레스 금리(1.5%p) × 적용비율(50%)
 ※ 다만,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, 은행권 취급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를 **1.20%p**(적용비율 80%)로 함

- (적용방법) 대출상품·금리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 차등 적용
 - (주담대) 변동형은 100% 적용하되, 혼합·주기형은 만기 대비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차등

구분	5년 미만	30% 미만	30~50%	50~70%	70% 이상
혼합형 주담대	100%	60%	40%	20%	미적용
주기형 주담대		30%	20%	10%	

- (신용대출) ① 만기 5년이상 고정금리는 미적용(0.0%p)
 ② 만기 3~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×60% 적용(0.45%p)
 ③ 그 외는 스트레스 금리×100% 적용(0.75%p)

□ (시행 및 경과규정) 9월 1일 이후 신규취급액부터 적용

- 8월 31일까지 집단대출 입주자모집공고 시행시, 일반 주담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, 종전규정(1단계 스트레스 DSR) 적용
- 증액없는 자행대환, 재약정은 '24년말까지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하고, '25년부터 적용

2 은행권 내부 관리목적 DSR 산출 및 관리

□ (개요)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목적 DSR 산출

- 은행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시 모든 대출에 대해 예외*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

*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(보금자리론·디딤돌 등 정책모기지, 중도금·이주비 대출, 전세대출, 총 대출 1억원 이하 대출 등)에 대해서는 DSR 미산출 중

- 은행은 차주의 소득 및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 대출 건전성 및 가계대출 관리업무 등에 활용

< 내부 관리목적 DSR 세부내용 >

□ (시행시기) '24.9.1. ~

□ (대상기관·대출) 은행권 전체 신규취급 가계대출

□ (산출방법) DSR 산출시 기존부채의 원리금 산정방식*을 예외없이 적용하고, 대출상품·지역·차주소득 등에 따른 DSR 수준도 산출

* 주요 대출상품별 산정례: i) 정책성모기지→실제 원리금, ii) 중도금·이주비대출→원리금(25년 만기), iii) 전세자금대출·예금담보대출→실제 이자부담액 등

□ (활용례) 00은행의 대출종류·소득수준별 DSR 현황 (예시)

대출종류 차주소득	주담대(담보별)		주담대(지역별)		주담대(정책성)		전세대출		신용 대출	...	평균
	APT	비APT	수도권	지방	디딤돌	보금 자리론	버팀목	은행 일반			
⋮	-	-	-	-	-	-	-	-	-		-
⋮	-	-	-	-	-	-	-	-	-		-
4 ~ 6천만원	0.0%*	-	-	-	-	-	-	-	-		-
⋮	-	-	-	-	-	-	-	-	-		-
⋮	-	-	-	-	-	-	-	-	-		-
평균	-	-	-	-	-	-	-	-	-		-

* 1) 00은행에서 2) 소득 4~6천만원이면서, 3) APT 주담대를 받은 차주의 평균 DSR

- (활용방안) 내년부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시 DSR 관리계획도 수립·반영하고 모니터링
 - 향후 은행별 DSR 자율규제(평균 DSR 및 高DSR 비중 관리) 및 차주별 DSR 규제비율 확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
- (기대효과) 대출종류·소득·지역 등 다양한 기준별 DSR 산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보다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 가능

3 추가조치 검토 및 단계적 시행

-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,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
 - 필요시 ❶DSR 적용범위 확대, ❷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조치 검토 및 단계별 시행

III. 향후 계획

- (9월~)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및 은행권 관리목적 DSR 산출
- ('24.말) 은행별 '25년 가계부채 관리 경영계획 및 DSR 관리 계획 수립·협의
- (수시) 가계부채 모니터링 및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조치 검토